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999. 9. 16
시민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9. 9. 9.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99. 9. 9.
- 다. 상정일자 : 제64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99. 9. 1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권창주 건축과장)

가. 제안이유

건축법이 1999.2.8 법률제5895호로 개정되어 공포후 3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되고, 동법시행령이 1999.4.30 대통령제16284호로 개정되어 1999.5.9부터 시행되면서 동 개정법령에서 종전에 자치구 조례로 위임되었던 사항들이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조례로 통합하여 하나의 체제로 운영토록 변경됨에 따라 동 개정법령의 내용대로 1999.7.31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전문 개정되어 시행되게 되어 불필요하게된 본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를 폐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건축법이 개정(1999.2.8 법률 제5895호)되고,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건축법시행령이 개정

(1999.4.30 대통령령 제16284호)됨에 따라, 개정 법령에서 종전에 자치구 조례로 위임되었던 사항들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 조례로 통합하여 하나의 체제로 운영토록 변경되었음.
따라서 서울특별시건축조례의 전문개정(1999.7.31 조례 제3665호)에 따라 불필요하게된 우리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의요지(이천규 위원) : 마포구 건축조례가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운영되는 것인지?
- 답변요지(권창주 건축과장) : 예.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1999. 9.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건축법이 1999.2.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어 공포후 3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되고, 동법 시행령이 1999.4.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어 1999.5.9부터 시행되면서 동 개정법령에서 종전에 자치구 조례로 위임되었던 사항들이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조례로 통합하여 하나의 체제로 운영토록 변경됨에 따라 동 개정법령의 내용대로 1999.7.31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전문 개정되어 시행되게 되어 불필요하게된 본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개정골자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를 폐지함

3. 개정근거

- 건축법(1999.2.8 법률 제5895호)
- 건축법시행령(1999.4.30 대통령령 제16284호)
- 서울특별시건축조례(1999.7.31 조례 제3665호)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부 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31일부터 적용한다.